

남북법제 이슈페이퍼

2020-11월호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목 차

- 북한 「경제개발구법」 주요 내용 분석 · 1
- 북한 「도로법」 주요 내용 분석 12

북한 「경제개발구법」 주요 내용 분석

I. 「경제개발구법」의 제정 배경

1. 초기 경제특구의 지정

- 80년대에 시작된 북한의 경제난은 90년대에 들어 냉전체제와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으로 인한 사회주의 연대의 와해,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 그리고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사회주의 체제의 불안정성 등으로 더욱 심화되었음
- 이를 위한 타개책으로서 북한은 1991년 2월 최초의 경제특구로 나진·선봉지역을 선택한 것을 시작으로 20여 년 동안 다수지역에서 경제특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정치적 상황에 따른 대외고립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하였음¹⁾
- 2000년대 초반 남북관계를 활용한 금강산관광지구 및 개성공업지구에서는 타 경제특구에 비하여 성과가 있었으나 남북관계가 악화된 이후로 현재까지 재가동되지 않고 있음

2.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구 정책과 「경제개발구법」 제정

- 김정은 정권은 급격한 권력세습과정에서 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체제를 공고화할 필요가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김정일 정권으로부터 이어진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개선책의 마련이라는 두 가지의 과제가 있었음
- 이에 김정은은 경제 개선책으로 경제개발구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한 입법으로 2013년에 「경제개발구법」을 발표하였음.
- 이러한 김정은 정권에서의 경제개발구 정책은 기존의 김정일 정권에서 시행하였던 특수경제지대정책과 차이가 있음. 1991년에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선정으로 시작된 특수경제지대정책은 신의주, 개성, 금강산까지 합해 4대 경제특구가 형성되었으며 이 지역들을 규율하는 각각의 특별법인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신의주특별행정기본법」,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에 의하여 운영되었음. 하지만 김정은 정권에서 시행한 경제개발구는 중앙급 8

1) 안석호, “북한의 경제개발구법 하위규정에 관한 연구 -경제개발구의 창설 및 관리·운영을 중심으로-”, 『2016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2016, 242면.

개와 지방급 19개를 합쳐 27개에 달하고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있으며 「경제개발구법」이라는 통합된 법체계를 통해 운영됨. 또한 기존에 특화된 산업이 없이 운영되었던 경제특구지역과는 다르게 공업, 농업, 관광, 수출가공, 첨단기술 등의 산업을 각 경제개발구에 지정하여 특화시켜 운영됨

- 이러한 북한의 경제개발구 지역은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1] 북한의 경제특구지역



[출처: 차명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2018.11, 8면]

II. 「경제개발구법」의 주요 내용

- 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2호로 채택된 「경제개발구법」은 총 7개의 장과 6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경제개발구법」의 기본(제1장)

- 「경제개발구법」은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개발, 관리를 제도화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가지고 있음(제1조)
- 여기서 경제개발구란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를 말하며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 같은 경제 및 과학기술분야의 개발구들이 속함(제2조).²⁾
- 경제개발구에 대한 기본원칙으로서 투자가에 대하여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제5조), 투자가에게 부여한 권리와 투자재산과 합법적인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음(제7조)
- 또한 하부구조건설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대한 투자를 특별히 장려하고 있음(제6조)

2. 경제개발구의 창설(제2장)

- 경제개발구의 창설은 국가의 경제발전전략에 따라 하여야 함(제10조). 이에 대하여 「경제개발구법」은 경제개발구 지역선정원칙으로 ① 대외경제협력과 교류에 유리한 지역 ② 나라의 경제 및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 ③ 주민지역과 일정하게 떨어진 지역 ④ 국가가 정한 보호구역을 침해하지 않는 지역에 선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제11조)
- 경제개발구와 관련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가 다른 나라 투자가로부터 경제개발구의 창설 및 개발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문건으로 넘겨주어야 하며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문건을 검토 및 확인하여 처리함(제12조)
- 지방급경제개발구와 중앙급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내고(제14조, 제15조), 경제개발구의 창설승인은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가 하며(제17조), 경제개발구의 창설에 대한 공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함(제18조)
- 북한은 「경제개발구법」을 통해 창설신청 및 승인, 공포질서를 규제하는 이유에 대해 경제개발구의 창설에서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 설명함³⁾

2) 북한은 이러한 경제개발구에 대해 “해당 나라가 국내외의 투자를 끌어들이어 중요산업분야를 추켜세우거나 해당 지역 및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를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구획을 그어놓은 다음 거기에만 적용되는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세우고 특혜적인 우대정책이 실시되는 지역”이라 설명하고 있다. 리명숙, “경제개발구에 대한 일반적리해”,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제60권 제2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4, 109면.

3) 강정남, “경제개발구법제도에 대한 리해에서 제기되는 기초적인 문제”, 『정치법률연구』 제3호, 과학백과

3. 경제개발구의 개발(제3장)

- 「경제개발구법」은 개발원칙과 관련하여 ①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개발하는 원칙 ② 투자유치를 다각화하는 원칙 ③ 경제개발구와 그 주변의 자연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원칙 ④ 토지와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원칙 ⑤ 생산과 봉사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원칙 ⑥ 경제활동의 편의와 사회공공의 이익을 다같이 보장하는 원칙 ⑦ 해당 경제개발구의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음(제19조)
- 「경제개발구법」상 개발당사자는 외국과 북한이 모두 포함되며(제20조) 개발기업에 대한 승인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함(제21조)
- 개발기업은 토지를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국토관리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며 토지임대료를 지불하고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제24조) 토지임대기간은 토지이용증을 발급한 날부터 최고 50년까지이며 토지임대기간이 끝났을 경우 필요에 따라 재계약을 맺고 계속 이용할 수 있음(제25조)
- 기관, 기업소, 단체는 외국의 투자가와 함께 개발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정해진 데 따라 토지이용권을 출자할 수 있음(제26조)
- 기업의 토지이용권과 건물소유권은 관리기관에 등록되어야 하고(제30조), 매매, 재임대, 증여, 상속, 저당할 수 있으며 그 가격은 개발기업이 정함(제29조)

4. 경제개발구의 관리(제4장)

- 경제개발구의 관리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지도방조밑에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이 함(제31조)
- 「경제개발구법」은 경제개발구의 관리원칙으로 ① 법규의 엄격한 준수와 집행 ② 기업의 독자성보장 ③ 경제활동에 대한 특혜제공 ④ 국제관례의 참고를 규정하고 있음(제32조)
- 관리기관은 해당 경제개발구의 실정과 실리에 맞는 성원으로 구성됨. 책임자는 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이고 관리기관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며 관리기관 사업을 주관함(제35조)
- 관리기관은 자체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예산편성 및 집행정형과 관련한 문건을 해당 인민위원회 또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제출함(제37조)

5. 경제개발구에서의 경제활동(제5장)

- 경제개발구에서 기업을 설립하려는 투자가는 관리기관에 기업창설신청문건을 내며 관리기관은 문건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줌(제38조)
- 경제개발구에서의 기업 설립과 관련하여 담당 기관은 수속절차를 간소화하며 (제39조)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기업은 정해진 기일 안에 창설등록, 주소등록,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함(제40조)
- 경제개발구의 기업은 북한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외국의 노동자를 채용하려 할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합의하여야 함(제41조)
- 경제개발구 종업원의 최저임금의 경우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정하며 관리기관 또는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와 협의함(제42조)
- 경제개발구에서 거래되는 상품·봉사가격, 경제개발구 안의 기업과 개발구 밖의 북한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에 거래되는 상품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따라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함(제43조)
- 경제개발구에서 기업의 회계계산과 결산은 경제개발구에 적용되는 재정회계관련법규⁴⁾에 준하여야 하며 재정회계관련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름(제44조)⁵⁾
- 경제개발구에서 기업소득세율은 결산이윤의 14%로 하고, 장려하는 부문의 기업소득세율은 결산이윤의 10%로 함(제45조)
- 경제개발구에서 유통화폐와 결제화폐는 조선원 또는 정해진 화폐로 하며(제46조)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음(제47조)
- 경제개발구에서 지적소유권은 법적보호를 받으며(제48조) 투자가는 정해진 데 따라 관광업을 할 수 있음(제49조)
- 통행검사, 세관, 검역기관과 해당 기관은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관리, 투자가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을 보장하여야 함(제50조)

4) 경제개발구에 적용되는 재정회계관련법규와 관련하여 북한 문헌에서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하여 경영활동을 하게되는 외국투자기업들에는 국내일반지역의 외국투자기업들에 적용되는 『회계법』이나 『외국투자기업회계법』과 그 시행규정들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재정회계관련법규의 구체적인 명칭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 탁향미, “경제개발구회계제도의 주요특징”, 『경제연구』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58면.

5) 북한 문헌을 살펴보면 외국투자가자들의 의견과 이익을 존중하여 북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르도록 규제하였다고 평가한다. 북한의 이러한 모습은 법제정비에 있어 국제적 기준을 염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탁향미, “경제개발구회계제도의 주요특징”, 『경제연구』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57-58면; 김철학, “국제회계관습의 옳은 적용은 경제개발구활성화의 중요담보”, 『경제연구』 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8, 48-49면 참조.

- 경제개발구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유가증권거래가 가능함(제51조)

6. 장려 및 특혜(제6장)

- 경제개발구에서는 투자가에 대한 여러 특혜를 보장하고 있음⁶⁾
-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실지수요에 따라 먼저 제공되며 토지의 사용분야와 용도에 따라 임대기간, 임대료, 납부방법에서 서로 다른 특혜를 줌(제52조)
- 또한 경제개발구에서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해주고(제53조) 투자가가 이윤을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리거나 새로운 기업을 창설하여 5년 이상 운영할 경우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액 50%를 돌려주며 하부구조건설부문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돌려줌(제54조)
- 경제개발구에서 개발기업은 관광업, 호텔업 같은 대상의 경영권 취득에서 우선권을 가지며 하부구조시설과 공공시설운영에는 과세를 하지 않음(제55조)
- 또한 경제개발구에서는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하고 관세면제대상으로 건설용물자, 가공무역·중계무역·보상무역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물자, 기업의 생산·경영용물자, 생산한 수출상품, 투자가가 쓸 생활용품 등을 명시하고 있음(제56조)
- 경제개발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하며 물자를 반출입하려 할 경우에는 물자반출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세관에 냄(제57조)

7. 신소⁷⁾ 및 분쟁해결(제7장)

- 경제개발구에서 개인 또는 기업은 관리기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 해당 기관에 신소할 수 있고, 신소를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 처리해야 함(제59조)
- 경제개발구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서는 ① 당사자들 간의 조정의 방법으로 해결하거나(제60조) ② 중재합의에 따라 북한 또는 해외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제기하여 해결하거나(제61조) ③ 해당 경제개발구에서 관할하는 도(직할시)재판소 또는 최고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제62조)

6) 북한은 경제개발구 장려 및 특혜제도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국가가 중시하는 부문의 외국투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김춘영, “경제개발구장려 및 특혜제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 법률)』 제64권 제1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8, 94-98면.

7) 북한에서 신소는 자기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침해를 미리 막거나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회복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북한은 신소에 대한 자세한 절차를 「신소청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Ⅲ. 「경제개발구법」의 특징 및 과제

1. 「경제개발구법」의 특징

1) 기관 및 기업소 참여의 장려

- 「경제개발구법」은 제20조에서 개발당사자로 외국과 기업소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26조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토지이용권 출자에 관하여 보장하고 있음
- 또한 제43조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에 거래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책정에 대해 국제시장가격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경제개발구 내의 기업뿐만이 아닌 개발구 밖의 기관과 기업소들까지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이는 북한이 「경제개발구법」을 통해 북한의 기관 및 기업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외국의 참여를 보장하여 외자유치의 확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임⁸⁾

2) 외화유통의 합법적인 확산을 장려

- 「경제개발구법」 제46조에서는 유통화폐와 결제화폐와 관련하여 조선원 또는 정해진 화폐로 하게 하면서 제47조에서 외화의 자유로운 반출입과 이윤과 기타 소득을 제한없이 경제개발구 밖으로 송금할 수 있게 함
- 북한에서 화폐가치가 불안정하다는 점은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요소인데, 경제개발구에서 자유로운 외화유통을 합법화하여 거래 시에 외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은 외국인 투자유치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⁹⁾

3) 기본법체계의 구축

- 「경제개발구법」은 향후 북한이 지정·개발하게 될 모든 개발구에 적용될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8) 안석호, 『북한의 경제개발구법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32면.

9) 유옥, “북한 경제개발구법 제정 배경과 의미”, 『통일경제』 겨울호, 현대경제연구원, 2014, 78면; 리현철, “경제개발구의 법률적환경보장에서 지켜야 할 원칙”, 『경제연구』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7, 50-51면; 강정남, “경제개발구의 투자환경과 조건보장을 위한 법률적환경의 조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률)』 제63권 제2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7, 99-103면 참조.

- 이러한 「경제개발구법」 기존의 특수경제지대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개별적인 경제지대에 적용되는 독자적인 법제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발구에 대해 「경제개발구법」을 기본법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북한이 「경제개발구법」과 같은 기본법제를 구축한 점은 향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북한의 법체계를 다지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

2. 「경제개발구법」의 과제

1) 관리기관 분리의 필요

- 북한은 「경제개발구법」에서 중앙급과 지방급 경제개발구에서 중앙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개발구가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이를 개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경제개발구법」 제3조에서는 “관리소속에 따라 지방급경제개발구와 중앙급경제개발구”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는 지방급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제출을 규정하며 제31조에서는 경제개발구의 관리와 관련하여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제34조에서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사업내용으로 관리기관의 조직, 경제개발구법규의 시행세칙 같은 국가관리문건의 작성 및 시달, 기업에 필요한 로력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북한은 지방정부의 권한에 제한을 두었음. 이와 같은 문제는 「경제개발구법」 제33조에서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의 사업내용으로 국가의 발전전략안 작성, 다른 나라 정부들과의 협조 및 투자유치, 위원회·성·중앙기관들과의 사업연계, 기업창설심의기준의 검토승인, 세무관리 등 경제개발구와 관련된 핵심 사업 관리에 대해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에서 나타나고 있음
- 이처럼 북한이 지방에 권한을 주는 데에 제한을 두는 것은 중앙에서의 지배력이 느슨해진다면 체제유지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개성공단이나 라선지대와 같은 기존의 경제특구의 개발사업에 보다 초점을 두고 지방급 경제개발구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관리기관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¹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기존의 경제특구 사업에서 거두

10) 유현정,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에 대한 평가와 전망”, 『국가전략』 제20권, 제1호, 세종연구소, 2014, 54면.

지 못한 점을 개선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함

2) 조문 간 충돌되는 부분의 해결

- 「경제개발구법」에서의 조항 간의 모순과 충돌을 해결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경제개발구법」 제34조에서는 도·직할시 인민위원회의 사업내용으로 “경제개발구의 기업에 필요한 로력 보장¹¹⁾”을 규정하여 도·직할시 인민위원회가 로력 보장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음. 반면 제41조에서는 “경제개발구의 기업은 해당 로동행정기관에 로력채용신청문건을 내고 로력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로력 보장의 담당기관을 로동행정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는 로력 보장에 대한 담당기관을 불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경제개발구법」에서 체제정합성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¹²⁾
- 이에 「경제개발구법」에서 조문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음

3) 경제개발구의 확산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

- 「경제개발구법」은 경제개발구 사업과 관련하여 경제개발구와 경제개발구 이외의 지역을 분리하여 폐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음¹³⁾
- 이는 외자유치를 통해 선진과학기술과 선진운영방식을 개발구 내에 수용하고 이를 다시 타 지역에 확산시키는 중국의 개방정책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음
-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경제개발구에서의 방식을 점차 확산시켰다면 북한의 경우에는 개발구를 하나의 섬과 같은 것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임
- 이에 북한이 경제개발구를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려 한다면 「경제개발구법」의 개선을 통해 타 지역에도 경제개발구 사업을 북한 내지와 연계하여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

11) 북한에서 ‘로력 보장’이란 기관이나 기업소에서 인력채용과 노동자 보호를 함께 의미하고 있다.

12) 장소영, 『북한 경제와 법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경인문화사, 2017, 277면.

13) 유현정,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에 대한 평가와 전망”, 『국가전략』 제20권, 제1호, 세종연구소, 2014, 531면.

IV. 결론

1. 국제적 기준 정합성 확보 노력

- 최근 북한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국제적 기준을 따라가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음
- 특히 「경제개발구법」에서도 기업의 회계와 관련하여 재정회계관련법규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북한은 이러한 법제정비를 통해 대외적으로 정상국가로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적 인정을 받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이루려 하고 있음
- 이렇게 북한이 국제적 기준을 따르려 하는 법제도적 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면 대북제재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됨

2. 경제개발구 정책과 남한 기업의 진출

-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공업, 무역 첨단기술, 농업 관광 등의 단일유형과 수출가공, 현대 농업, 관광휴양 등과 같이 다수의 유형이 복합된 형태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음
- 또한 전국적으로 분포하여 지방분권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기업들이 다양한 업종과 이에 맞는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있음
- 이렇게 북한이 외국자본을 통해 전 지역의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은 남북경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김정일 정권에서 시행하였던 특수경제지대 정책에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가 중점적인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구 정책에 기반한 남한 기업 진출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개발구법」의 제정은 외국 기업과 남한 기업 진출의 토대가 될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남한 기업 진출을 위한 경제개발구 관련 법제 정비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참고문헌

1. 단행본

- 안석호, “북한의 경제개발구법 하위규정에 관한 연구 -경제개발구의 창설 및 관리·운영을 중심으로-”, 『2016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2016.
- 유욱, “북한 경제개발구법 제정 배경과 의미”, 『통일경제』 겨울호, 현대경제연구원, 2014.
- 유현정,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에 대한 평가와 전망”, 『국가전략』 제20권, 제1호, 세종연구소, 2014.

2. 논문

- 안석호, 『북한의 경제개발구법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장소영, 『북한 경제와 법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경인문화사, 2017.

3. 북한문헌

- 강정남, “경제개발구법제도에 대한 리해에서 제기되는 기초적인 문제”, 『정치법률연구』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3.
- 강정남, “경제개발구의 투자환경과 조건보장을 위한 법률적환경의 조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 법률)』 제63권 제2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7.
- 김철학, “국제회계관습의 옳은 적용은 경제개발구활성화의 중요담보”, 『경제연구』 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8.
- 김춘영, “경제개발구장려 및 특혜제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 법률)』 제64권 제1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8.
- 리명숙, “경제개발구에 대한 일반적리해”,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제60권 제2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4.
- 리현철, “경제개발구의 법률적환경보장에서 지켜야 할 원칙”, 『경제연구』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7.
- 차명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2018.11.
- 탁향미, “경제개발구회계제도의 주요특징”, 『경제연구』 제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북한 「도로법」 주요 내용 분석

I. 연구 필요성

- 북한은 개성~평양~신의주(서해안축), 고성~원산~나진·선봉(동해안축), 평양~원산(동서축)으로 구성된 H자형의 간선도로망을 형성하고 있음. 8개의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차량통행이 가능한 4급 이상의 도로는 약 25,000km로 남한의 27%수준이며, 대부분 비포장도로임. 북한의 도로상황은 네트워크의 밀도 뿐 아니라 도로의 질(포장율, 도로선형, 차로수 등) 측면에서 매우 열악함¹⁴⁾
- 또한 북한은 산악 지형이 많고 주민이동을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석유 등의 부족으로 자동차의 활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도로가 주요 교통망이 되지 못하였음. 그러나 철도망이 노후화되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망으로서의 유용성이 낮아지면서 도로의 역할 확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¹⁵⁾
- 김정일 정권에서는 도로에 관한 사항을 「도시경영법」에서 도시 관리의 일부로 규정하다가 1997년에 도로건설,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도로법」을 제정하였고,¹⁶⁾ 2009년 10월에 중국과 평양-신의주 고속도로 및 신압록강 대교 건설에 합의하고 2010년 12월에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북·중 접경 지역의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도로 개발을 추진하였음.¹⁷⁾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는 「도로법」을 세 차례 개정하였고, 「도로법」 이외에도 「건설법」과 「도로교통법」과 같은 도로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도로건설,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음
- 북한은 이처럼 도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으므로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김정은 정권 이후 개정된 「도로법」을 중심으로 북한의 도로 관련 법제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자 함

14) 김경석, “관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도로분야 협력과제”, 『월간교통』 6월호, 2018, 19면.

15) 김철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북한 도로 인프라 특성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32권 제1호, 2020, 29면.

16) 남성욱·황주희, “북한의 도로정책과 남북협력 시사점”, 『입법과 정책』, 2019, p. 107.

17) 한명섭, 『통일법제특강』, 2019, 225면.

II. 북한 「도로법」의 주요 개정 내용 및 특징

1. 개요

- 북한 「도로법」은 1997년에 제정되었으며, 1999년, 2001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11년, 2013년 7월 및 10월, 2015년에 각각 개정되었음
- 「도로법」은 도로건설과 관리, 이용에서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도로운수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2015년 개정법을 기준으로 총 5장 4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도로법의 기본(제1장), 도로건설(제2장), 도로관리(제3장), 도로이용(제4장), 도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제5장)로 구분되어 있음
- 북한의 「도로법」은 우리의 「도로법」이 총 10장 1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비해 간단하고 핵심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우리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하위규정이 공개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을 전부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음¹⁸⁾

2. 「도로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2011년 개정

- 2011년에는 총 8개 조문을 개정하였음. 도로건설과 관리에서 선진과학기술과 공법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고(제6조), 세계적인 도로기술발전추세에 맞게 도로를 설계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음(제10조제2항)
- 도로건설 후 검사의 경우 구법에서는 준공검사만 거치도록 한 것을 공정검사, 중간검사, 준공검사로 단계를 세분화하였으며, 준공검사와 중간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한 도로는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도록 하였음(제16조)
- 또한 도로관리와 관련하여 도시로 들어오는 차는 세척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제22조), 도로 주변 관리를 위한 내용을 추가하였음(제23조)
- 이외에도 도로 이용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도로 표식물을 설치하도록 하고(제32조), 도로의 공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합의와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도로 이용에 지장을 주는 공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음(제34조제2항)

18) 박신, “북한도로관계법의 체계 및 남북한 도로협력을 위한 법적 과제”, 『북한법연구』 제21호, 2019, 121면.

[표 1] 2011년 개정 내용

내용	구법(2007. 3. 27. 개정)	개정법(2011. 4. 19. 개정)
과학연구, 기술자, 전문가 양성, 과학기술도입원칙(제6조)	국가는 도로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u>도로 건설과 관리를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u>	국가는 도로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u>도로의 현대화를 위한 과학연구사업과 기술자, 전문가양성사업을 강화하며 도로건설과 관리에서 선진과학기술과 공법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u>
도로의 설계(제10조 제2항)	도로설계기관, 기업소는 건설대상과 규모를 정확히 타산하고 <u>해당 지대의 자연지리적조건 같은 것을 고려하여 도로를 설계하여야 한다.</u>	도로설계기관, 기업소는 건설대상과 규모를 정확히 타산하고 <u>세계적인 도로기술발전추세에 맞게 도로를 설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속도로와 주요도로는 도(직할시), 시(구역), 군소재지와 주민지대를 우회시키며 부침땅¹⁹⁾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
도로건설의 질검사(제16조)	<u>도로건설이 끝나면 준공검사를 한다.</u>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도로는 도로관리기관에 넘겨줄수 없다.	국가건설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도로건설에 대한 공정검사, 중간검사, 준공검사를 엄격히 하여 <u>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u> 준공검사, 중간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단계의 공사를 할수 없으며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도로는 도로관리기관에 넘겨줄수 없다.
도로의 보수정비(제21조제2항)	포장도로의 파손된 부분은 제때에 수리하고 토사도로에는 <u>자갈이나 석비레를 퍼며 도로면을 다지거나 깔는 방법으로 평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u>	포장도로의 파손된 부분은 제때에 수리하며 토사도로는 <u>갯자갈 또는 석비레를 퍼거나 도로바닥을 깔고 다지는 방법으로 평탄도를 보장하여야 한다.</u>
차세척(제22조)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절적 특성에 맞게 도로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은 <u>도시입구도로 같은 필요한 장소에 차세척장을 꾸리고 도시로 들어오는 차를 깨끗이 청소하도록 하여야 한다.</u> 먼지 흙탕물 같은 것이 묻어 어지러워진 차는 도시로 들어올 수 없다.
도로의 주변관리(제23조)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로옆에 나무나 잔디를 심어야 한다. <u>도로의 필요한 곳에는 꽃밭, 휴식터를 꾸려야 한다.</u>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로옆에 나무나 잔디를 심어야 한다. <u>이 경우 도로의 성격과 주변환경에 어울리는 좋은 수종의 나무를 심으며 나무사이의 간격을 잘 조절하여야</u>

		한다.
도로표식물 (제32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로의 필요한 곳에 주의, 금지, 거리 표식과 리정표, 빛반사판 같은 도로표식물을 설치하여 도로리용의 편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u>도로의 정해진 곳에 경고, 금지, 지시, 안내 표식 같은 도로표식물을 설치하여 도로리용의 편리를 보장하여야 한다.</u> <u>도로표식물은 빛반사재료로 만들어야 한다.</u>
도로리용에 지장을 주는 공사금지(제34조 제2항)	필요에 따라 공사를 하려 할 경우에는 <u>해당 기관의</u> 승인을 받으며 돌림길, 교통안전시설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공사를 하려 할 경우에는 <u>해당 인민보안기관의 합의와 국토환경보호기관 또는 도시경영기관의</u> 승인을 받으며 차운행에 지장이 없게 돌림길, 교통안전시설을 만들어놓아야 한다.

2) 2013년 개정

- 2013년에는 총 5개 조문을 개정하였음. 도로이용허가증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여 허가증이 있어야 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제29조), 도로이용허가증 없을 경우에는 차의 운행을 중지시키도록 하였음(제42조). 기존에 두 개의 조문으로 분리되어 있던 고속도로 이용금지 조항(구법 제29조 및 제30조)은 한 개의 조문으로 정리하였음(제30조)
- 또한 도로사용료 부과대상에 ‘공민’을 추가하였고, 도로사용료는 도로건설 및 보수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음(제35조)

[표 2] 2013년 개정 내용

내용	구법(2011. 4. 19. 개정)	개정법(2013. 7. 24. 개정)
기술규정, 표준공법의 준수(제13조)	도로를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u>다리건설</u> , 지하구조물건설을 선행시키고 로반쌓기, 로반다지기, 도로포장에서 기술규정의 요구와 표준공법을 지켜야 한다.	도로를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u>다리, 굴길을 비롯한 도로구조물건설과 지하구조물건설을</u> 선행시키고 로반쌓기, 로반다지기, 도로포장에서 기술규정의 요구와 표준공법을 지켜야 한다.
도로리용허가증(제29조)	<u>고속도로는 정해진 차만이 운행할 수 있다.</u> <u>어지럽거나 제정된 속도를 낼수 없는 차는 고속도로로 운행할수 없다.</u>	<u>해당 차는 도로리용허가증이 있어야 도로로 운행할 수 있다.</u> <u>도로리용허가증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도, 시, 군도로관리기관이 해당 은행기관의 도로사용료 납부확인서에 따라 발급한다.</u>

고속도로의 리용금지 (제30조)	고속도로의 승인되지 않은 인입도로로는 차를 운행할수 없다. 공민은 고속도로로 걸어나거나 자전거를 타고다니지 말며 고속도로주변에서 개를 기르거나 짐짐승을 방목하지 말아야 한다.	<u>고속도로로는 정해진 차만이 운행할수 있다. 이 경우 어지럽거나 제정된 속도를 낼수 없는 차는 운행하지 말아야 한다.</u> 고속도로의 승인되지 않은 인입도로로는 차를 운행할수 없다. 공민은 고속도로로 걸어나거나 자전거를 타고다니지 말며 고속도로주변에서 개를 기르거나 짐짐승을 방목하지 말아야 한다.
도로사용료 (제35조)	<u>도로를 리용하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용료를 물어야 한다.</u> 다른 나라 사람이 관광, 짐수송 같은 목적으로 도로를 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문다. 도로사용료를 정하는 사업은 <u>중앙가격제정기관</u> 이 한다.	<u>도로로 차를 운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도로사용료를 물어야 한다.</u> 다른 나라 사람이 관광, 짐수송 같은 목적으로 도로를 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문다. <u>도로사용료는 도로건설 및 보수 같은 해당 용도에만 쓴다.</u> 도로사용료를 정하는 사업은 <u>국가가격기관</u> 이 한다.
운행 중지, 원상복구, 손해보상 (제42조)	도로와 그 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u>도로리용허가증이 없을 경우에는 차의 운행을 중지시키며</u> 도로와 그 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3) 2015년 개정

- 2015년에는 총 3개 조문을 개정하였음. 도로 이용의 원칙에서 도로는 나라의 얼굴이며, 문명정도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하여 중요성을 강조하였고(제4조), 도로 건설의 요구에 있어 중량화, 고속도화를 추가하였음(제8조). 또한 도로관리와 관련하여 사고방지대책 수립 규정을 추가하였음(제24조)

[표 3] 2015년 개정 내용

내용	구법(2011년 또는 2013년 개정)	개정법(2015. 1. 7. 개정)
도로의 리용 원칙(제4조)	도로는 나라의 경제발전수준을 보여주는 중요척도이다.(2011. 4. 19. 개정)	도로는 나라의 <u>얼굴이며</u> 경제발전수준과 <u>문명정도를</u> 보여주는 중요척도이다.
도로건설의 기본요구 (제8조)	도로건설을 잘하는 것은 <u>도로망을 완성하고 도로를 현대화하기 위한</u> 기본방도이다.(2011. 4. 19. 개정)	도로건설을 잘하는 것은 <u>나라의 전반적도로망을 합리적으로</u> 완성하고 <u>도로의 현대화, 중량화²⁰⁾, 고속도화</u>

		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도로 관리 구간의 분담 (제24조)	지방정권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은 도로의 정상관리를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 <u>m당관리제의 원칙에서 도로관리구간을 정해주고 정상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u> 도로관리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구간의 도로관리를 잘 하여 못쓰게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기관은 도로의 필요한 구간에 도로관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2013. 10. 23. 개정)	지방정권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은 <u>m당관리제의 원칙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에 도로관리구간을 정해주며 도로관리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구간의 도로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여 도로의 안정성, 문화성을 유지하여야 한다.</u>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은 도로의 필요한 구간에 도로관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도로보수가 청소, 눈치기 같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성원들이 발광조끼를 입도록 하며 차단물표식을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발광조끼를 입지 않고서는 도로에 나와 작업을 할 수 없다.

2. 「도로법」 개정의 특징

1) 국제적 건설기준 수용 의도의 반영

- 2011년 개정법은 선진과학기술과 공법을 받아들이고, 세계적인 발전 추세에 맞게 도로를 설계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제6조, 제10조제2항)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도로를 건설하고자 하는 의도를 법에 반영하였음
- 2009년 10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북한을 방문할 당시 ‘평양-신의주(평신) 고속도로’ 공동 건설에 합의하는 등 외국자본에 의한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²¹⁾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국제사회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같은 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도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관리 규정의 구체화

- 2011년 개정법은 도로설계 시 고속도로와 주요도로는 도, 시, 군 소재지와 주민 지대를 우회시키며 농경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고(제10조제2항), 도시로 들어

20) 중량화란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중량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의 중량을 늘리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1) 연합뉴스, 北-中 경제협력 가속도 불나, 2010. 02. 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135761>(검색일: 2020. 11. 16.)

- 오는 차는 청소하도록 하고 있음(제22조). 또한 도로 주변에 도로의 성격과 환경에 어울리는 나무를 심도록 하여(제23조) 관리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음
- 이는 도로의 건설과 이용에 의해 주변 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도로의 기능이 환경과 조화를 꾀하여 도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또한 도시미관을 강조해온 김정일 정권의 의지가 법에 반영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²²⁾

3) 외국자본 통제를 위한 검사기준 강화

- 2011년 개정법은 도로건설 후 검사 단계를 공정검사, 중간검사, 준공검사로 세분화하였고, 준공검사, 중간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단계의 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검사 기준을 강화하였음(제16조)
- 이는 외국 자본이 북한 내 도로를 건설할 경우, 엄격한 검사 기준을 제시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음. 2007년부터 중국의 민간 기업들은 북한 내 나진-원정 간 도로 개보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는데, 2011년에는 실제로 도로건설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던 시기이므로 이와 같은 사업 현황이 법령 개정 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임²³⁾

4) 수익성 보장을 위한 도로사용료 징수대상 확대

- 2013년도 개정법은 구법에서 도로사용료 부과 대상을 기관이나 기업소, 단체로 규정한 것에 ‘공민’을 추가함으로써 범위를 확대하였음(제35조)
- 북한 당국이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도로를 건설할 경우, 투자자에게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비 회수를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음²⁴⁾
- 또한 도로사용료는 도로건설 및 보수 같은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롭게 추가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제한하였음

22) 안병민, “북한 교통법제의 동향과 남북 교통법제 통합의 과제”, 『북한법연구』 제16호, 2015, 466면.

23) 중국은 2012년 12월에 북한 내 나진-원정 간 53km 도로를 중국 측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완공하였는데, 해당 도로의 건설은 개정된 「도로법」의 적용을 받았다고 한다. 안병민, “북한 교통법제의 동향과 남북 교통법제 통합의 과제”, 『북한법연구』 제16호, 2015, 466면.

24) 특히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 도로망 관련 연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안병민, “북한의 대외경제개방 확대와 국제철도화물수송법의 제정”, 『북한법연구』 제16호, 2015, 269면.

5) 도로교통 안전 정책 변화의 반영

- 2015년 개정법은 도로보수 작업 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추가하여 도로관리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는 대책을 강화하였음(제24조)
- 북한은 2013년에 교통질서 확립 포고문을 통해 “교통질서를 정연하게 세우고 교통사고를 미리 막는 것은 사회의 정치적 안정을 철저히 보장하고 나라와 인민의 생명재산을 믿음직하게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였음. 2015년에도 “나라의 사회적 정치적 안정을 철저히 보장하고 국가와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 이를 통해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 도로교통 안전이 규범적, 도덕적 차원에서 사회주의 질서 안정 및 안전을 위한 법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²⁵⁾ 이 같은 북한 당국의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관점 및 정책 변화가 「도로법」에도 반영되어 도로관리 시에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25) 문인철·송영훈, “북한 정권의 도로교통안전 관점 변화 연구, 1945~2017”, 『북한학연구』 제14권 제1호, 2018, 115-117면 참조.

참고문헌

1. 단행본

장명봉, 『2018 최신 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 2018.

한명섭, 『통일법제특강』, 한올아카데미, 2019.

2. 논문

김경석, “관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도로분야 협력과제”, 『월간교통』 6월호, 2018,

김철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북한 도로 인프라 특성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32권 제1호, 2020.

남성욱·황주희, “북한의 도로정책과 남북협력 시사점”, 『입법과 정책』 제11권 제2호, 2019.

문인철·송영훈, “북한 정권의 도로교통안전 관점 변화 연구, 1945~2017”, 『북한학 연구』 제14권 제1호, 2018.

박신, “북한도로관계법의 체계 및 남북한 도로협력을 위한 법적 과제”, 『북한법연구』 제21호, 2019.

안병민, “북한 교통법제의 동향과 남북 교통법제 통합의 과제”, 『북한법연구』 제16호, 2015.

안병민, “북한의 대외경제개방 확대와 국제철도화물수송법의 제정”, 『북한법연구』 제16호, 2015.